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번호 | 1813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3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타 지자체는 학생 방문이 많은 시설에 대해 공교육 기능의 강화와 폭넓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과학분야 체험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요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받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과학 대중화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체험활동을 증진하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립과학관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1항제12호 신설).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액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 기한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함(안 부칙 제2조).
- 관람료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을 무료로 함(안 별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별표 중 청소년 및 어린이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생 략)</p> <p>1. ~ 11. (생 략)</p> <p><신 설></p> <p>12. (생 략)</p> <p>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4. (생 략)</p> |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별표]

관 략 료 (제5조 관련)

| 구분 | 금액 | | 비고 |
|----|--------|------------|---------|
| | 개인 | 단체(20인 이상) | |
| 어른 | 2,000원 | 1,000원 | 20세~64세 |